

의안번호	2212690
의 퇴 인	박해철 의원
회 답 일	2025.11.13.
추 계 번호	25B48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83억원, 2031년 208억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975억원(연평균 195억원)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육아휴직 급여(안 제70조)	183	189	195	201	208	975	195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실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일자리 전환과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 하며,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실업 시 생활에 필 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70조(육아 휴직 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 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 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 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조(목적)	—	• 미대상 –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규정하여 고용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 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70조(육아 휴직 급여)	○	• 공식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동 개정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5년 9월 기준, 단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2	3.3	3.3	3.3	3.3	3.3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677호)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장 2주(1주 단위, 연 1회)의 육아휴직(이하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677호)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유인이 있음
 - (사용대상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단기 육아휴직 사용자 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단기 육아휴직 신청 사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행태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본 추계서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계획안에 따른 지원인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677호)
안 제19조(육아휴직)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2주로 하며,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표 2] 2026년 기준 단기 육아휴직 사업대상자

- (지원인원: 18,622명) ①맞벌이 15,449명 + ②외벌이 3,173명
 - ①맞벌이: $(2,694,810\text{명} \times 2 \times 55.4\% \times 77.0\% \times 2.4\% \times 54.9\% \times 51.0\%)$
 - ②외벌이: $(2,694,810\text{명} \times 55.4\% \times 77.0\% \times 1.2\% \times 45.1\% \times 51.0\%)$
 - (2,694,810명) '24년 0~8세(2,694,810명) 인구
 - (55.4%) '25.2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
 - (77.0%)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보험가입자 비율
 - (맞벌이 2.4%, 외벌이 1.2%) 휴가 사용률<제도시행 초기임을 고려한 휴가사용률>
 - (54.9%) 맞벌이 가구비율 / (45.1%) 외벌이 가구 비율
 - (51.0%) '24년 육아휴직 12개월 미만 사용자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 향후 단기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 및 사용률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677호) 제19조의4³⁾는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지급단가)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개정안에 따른 지원단가는 2024년 기준 월평균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1인당 월평균 지원단가는 연간 재정소요액을 지급인원으로 나누고, 이를 평균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
 - ※ 집행액: 2조 525억원(2024년 기준)
 - ※ 지급인원: 132,535명(2024년 기준)
 - ※ 지급기간: 8.7개월(2024년 기준)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 3] 모성보호 급여 유형별 집행 현황: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육아휴직 급여	1,212,143	1,297,525	1,657,231	1,796,995	2,052,487

주: 집행액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지급기간) 2주

- 본 추계서는 개정안에 규정된 단기 육아휴직의 최대 지급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단기 육아휴직이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각 개인의 육아휴직 사용 일수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감소할 수 있음

[표 4] 단기 육아휴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사업대상자 수(A, 명)	18,662	18,662	18,662	18,662	18,662
지원단가(B, 백만원)	1.96	2.02	2.09	2.16	2.23
지원기간(C, 개월)	0.5	0.5	0.5	0.5	0.5
추가재정소요(D=A×B×C)	183	189	195	201	208

-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실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육아휴직 급여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계획안 산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단기 육아휴직의 실제 사용자 수 및 지원기간 등 세부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